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감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35
----------	-----

발의년월일 : 2015년 12월 10일

발 의 자 : 강감창 의원(1명)

찬 성 자 : 이상묵·신건택·박중화·박성숙
박마루·황준환·김진영·이혜경
최호정·박기열·문영민·우형찬
최관술·서영진(14명)

1. 제안 이유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설치한 서울 시민청에 대한 시민들의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청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청의 확대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수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는 시민청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청에만 두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바, 시민청 확대 설치를 위해 시민청 소재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시민청의 위치를 서울시 청사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확대함(안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별첨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유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u>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u></p> <p>2.~4. (생략)</p> <p>제3조(개관 및 휴관)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p> <p>1. ~ 3. (생략)</p> <p>4.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u>서울특별시 소유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u></p> <p>2.~4. (현행과 같음)</p> <p>제3조(개관 및 휴관)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시장이</u>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p>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호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청 소재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강감창